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321180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53351, 2021나55906(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321180 판결

전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상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봉규

변론 종결 2021. 5. 13.

판결 선고 2021. 6. 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8,272,122원과 그 중 8,408,043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8.까지 연

6%, 29,864,079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18.까지 연 6%,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7. 12.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8. 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38,272,122원 중 8,408,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8. 6.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162,337,0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162,337,06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함)은, 아래의 피보험자들과 사이의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아래 순번 3의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 B	2017. 11. 28.	100,000,000원	2017. 11. 7. ~ 2019. 11. 6.	E(주)
2	피고 B	2018. 1. 8.	30,000,000원	2018. 1. 5. ~ 2019. 1. 4.	(주)F
3	피고 C	2018. 8. 14.	10,000,000원	2018. 8. 6. ~ 2019. 8. 5.	(주)G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이 위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0일 경과 후부터는 연 9%)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3) 위 피보험자들이 피고 B과 피고 C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1	2018. 8. 4.	2019. 5. 15.	2019. 6. 12.	100,000,000원	E(주)
2	2019. 3. 19.	2019. 4. 2.	2019. 4. 18.	29,864,079원	(주)F
3	2019. 3. 13.	2019. 3. 13.	2019. 4. 8.	8,408,043원	(주)G
합계	138,272,122원				

나. 피고 B의 피고 주식회사 D으로의 매도 행위 등

1) 피고 B은 2018. 11. 23.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함) 앞으로 2018. 10.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H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554,957,467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일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법원 감정금액 3,344,336,440원), ② 부산 서구 I 소재의 토지와 건물(가액 125,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적어도 4,702,777,637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1	원고에 대한 2017. 11. 28.경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	100,000,000원
2	원고에 대한 2018. 1. 8.경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	29,864,079원
3	원고에 대한 2018. 7. 18.경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	8,408,043원
4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7. 5. 17.경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273,084,435원
5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4. 4. 3.경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283,207,111원
6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6. 6. 30.경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23,788,502원
7	H은행에 대한 2014. 4. 3.경 대출금 채무	1,759,637,084원
8	H은행에 대한 2016. 8. 22.경 대출금 채무	291,744,767원
9	H은행에 대한 2018. 5. 23.경 대출금 채무	503,575,616원
10	J카드에 대한 2018. 9. 6.경 대출금 채무	4,000,000원
11	K카드에 대한 2018. 9. 28.경 대출금 채무	3,300,000원
12	H은행에 대한 2018. 9. 18.경 대출금 채무	12,000,000원
13	L은행에 대한 2018. 8. 7.경 대출금 채무	20,000,000원
14	기업은행(본부총괄)에 대한 2017. 5. 25.경 대출금 채무	100,000,000원
15	H(지역)에 대한 2016. 8. 8.경 대출금 채무	790,168,000원
16	M은행(본부총괄)에 대한 2017. 12. 26.경 대출금 채무	500,000,000원
합계	4,702,777,637원	

[인정근거]

- 피고 B, 피고 C 부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각 대위변제금 합계 138,272,122원과 그 중 8,408,043원에 대하여는 2019. 4. 9.부터 2019. 5.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29,864,079원에 대하여는 2019. 4. 19.부터 2019. 5.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3.부터 2019. 7.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8.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8,272,122원 중 1) G에 대한 대위변제금 8,408,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8.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부분(사해행위 취소 부분)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138,272,122원의 구상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2018. 10. 23.자 매매계약 이전인 2017. 11. 28.부터 2018. 8. 14. 사이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피고 D의 주장 ① 피고 B은 담보권자인 H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을 거부당하고 당장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처지가 된 점, ②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8. 5월경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처분을 의뢰하였지만 30억 원이라는 가격에는 거래 문의조차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은 H은행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972,500,000원으로 M은행의 감정평가액인 3,305,146,220원의 90% 정도인 점, ⑤ 피고 D이 자기 자금 2억 원 가량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 B와 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M은행 감정평가액은 대출 한도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높게 평가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 B이 2011. 6월경 ○(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의 감정평가액인 2,154,662,760원보다 낮은 2,000,000,000원에 매입한 점, ⑧ 이 사건 부동산 바로 옆에 위치한 부동산 등의 최근 매매가격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부당한 염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위 경위에 비추어 피고 D은 선의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여러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8, 19,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D 주장의 매매대금이 시가의 88% 정도이므로 부당한 염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매대금 중 H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이상 피고 B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을 선의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

가) 피고 D의 대표이사 P과 피고 B은 친인척의 관계에 있다. 피고 C(대표이사 피고 B)과 피고 D의 본점은 동일 지번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344,336,440원이고, 근저당권자인 H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2,554,957,467원이었다.

라) M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305,146,22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 D에 2,9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마) 피고 D은 2018. 11. 23. 위 대출금 2,950,000,000원 중 2,554,957,467원으로 H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남은 대출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피고 B의 H은행 계좌로 417,542,533원을 송금하였다(피고 D은 위 2,554,957,467원과 417,542,533원을 더한 2,972,500,000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함). 위 송금 직후 위 H은행 계좌에서 417,500,000원이 '대체' 방식으로 출금되었는데, 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피고 D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772,500,000원(부가가치세 72,500,000원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 심화되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 전체 범위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H은행으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2,554,957,467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D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던 날 같은 날짜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344,336,4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은 적어도 위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위 부동산 가액 3,344,336,440원에서 H은행의 피담보채무액 2,554,957,467원을 공제한 789,378,973원이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B에 대한 채권(2.항 참조)의 액수를 계산해 보면, 원금은 138,272,122원이고, 이에 대한 2020. 1. 15.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7,597,298원이며, 2020. 1.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5. 13.까지의 연 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16,467,641원이므로, 합계 162,337,061원이다.

5) 따라서, 피고 D이 가액배상할 금액은 공동담보가액 789,378,973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2,337,061원 중 적은 금액인 162,337,061원이다.

라. 소결론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162,337,0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62,337,0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규현

별지

1) (주)G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피고 C이 연대보증한 채무이다.